

2024년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4. 15.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5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2,656건(5,188개 게시물, 안전번호 제2024-36402호~3905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4-36402호~36419호(순번 1번~18번)는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영상물 및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4-36420호~36430호(순번 19번~29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전번호 제2024-36431호~제2024-39057호(순번 30번~2656번)는 모두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5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위원: 제1호 안건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C,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5,188개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총 2,656건의 안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18번은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및 카페에 영상 불법복제물 12건, 웹하드에 출판 불법복제물 6건을 게시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53개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9번~2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 '●●●●●' 및 ○○○ 카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6개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0번~265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영상,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며 총 5,109개의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번~18번은 ○○○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영상물 및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건들은 모두 데드카피 건으로 순번 1~18번에 대하여 가결 의견이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19번~29번은 중고거래 사이트 및 ○○○ 카페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가결 의견임. 다만 안건의 저작

물명이 'PDF 중고거래'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침해 저작물명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책 이름 등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9번~2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2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0번~265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영상,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며 총 5,109개의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소프트웨어,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만화 '은아 명견 실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427번은 만화 '은아 명견 실버'를 스캔본 형태로 웹하드에서 900포인트로 판매 중인 사안으로, 해당 만화는 현대 예스24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태임.
(영화 '툰:파트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043번은 웹하드에서 '툰:파트2'를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으로, '툰:파트2'는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로 금 회 심의 안건에 다수 포함되어 있음.
(소프트웨어 'Autodesk Inventor (인벤터) 202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638번은 웹하드에서 소프트웨어 'Autodesk Inventor (인

벤처) 2024'를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 공식홈페이지에서 월 400,226원에 판매중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30번~265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0번~265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36402호~39057호(순번 1번~265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22.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최태경
위원	홍승기